

제27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10월20일  
전문위원 배 금 택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20 - 95
-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10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4일

## 2. 제안이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조문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  
(안 제7조 및 제8조)
- 나.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근거 명확화  
(안 제7조의2제2항)
- 다. 수강료는 조례 별표1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7조의3)
- 라.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 확대  
(안 제7조의4)
- 마. 수강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여 적극행정 유도  
(안 제7조의5제1항)

- 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기준 변경(안 제16조제2항)
- 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
- 2)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2
-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해당없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8.28.~2020.9.17.)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

- 구립도서관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수강료 미반환 원칙 규정을 반환 원칙으로 수정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안 제7조 및 제8조)

- 기존 도서관 시설사용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공시설 사용에 허가라는 표현은 불합리한 규제 표현으로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사용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고(안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라는 문구도 시설사용의 제한으로 수정함(안 제8조)

○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을 개정  
(안 제7조의2제2항)

- 종전 시설 사용료 감면사유 중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전액면제 한다고 감면을 명시하였으나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후원하는 경우 전액 면제,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50% 감경하도록 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을 모두 규정하였고,
- 기존의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이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을 감면사유에서 삭제하여, 대상에 따른 감면보다는 사용목적 위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함

[감면 조항 비교]

현 행 (제7조의2 제3항)	개정안 (제7조의2 제2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u>전액 면제</u>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삭제)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삭제)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u>100분의 50 감경</u>

- 수강료를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안 제7조의3)
  - 제7조의3제2항에서 시행규칙으로 수강료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별표1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여 월 2만원 이하의 상한 기준만을 규정함

[별표1] 수강료

구 분	금 액	비 고
강좌, 교육	월 2만원 이하	

- 수강료의 감면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른 감면을 준용함으로써 감면 대상 확대 (안 제7조의4)

현 행	개정안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8조의2)
<p>제7조의4(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li> <li>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li> <li>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18조의2(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li> <li>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li> <li>3. (삭제 2017. 12. 28.)</li> <li>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li> </ol>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li> <li>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li> <li>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li> <li>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li> <li>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li> <li>6.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li> <li>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li> </ol>

- 수강료 및 사용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여 적극 행정 유도(안 제7조의5제1항)
  - 기존 수강 개시일 절반이 지난 후에는 미반환 하던 기준을 개시일과 관계없이 남은 기간의 수강료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수강료 반환 기준을 규정한 별표2는 삭제함
-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기준 변경(안 제16조제2항)
  -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준용 조항 변경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에 대해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청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사용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 도서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조정하여 사용의 목적에 따라 감면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 또한, 수강료의 감면 조항을 각 시설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강서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제18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였던 바 이는 도서관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이 조항을 준용하는데 규정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이며, 감면대상의 확대 측면에서도 현재 구립도서관에서 감면대상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시행에 따른 예산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원칙으로 되어있는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수강료 반환원칙으로 개정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의2(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
3. (삭제 2017. 12.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 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7. 「서울특별시 강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